

제292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
[2022. 11. 23. 1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2. 11. 2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2년 11월 23일
전문위원 장 석 현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2022 - 103
- 나. 제 출 자: 강서구청장
- 다. 제출일자: 2022년 11월 7일
- 라. 회부일자: 2022년 11월 11일

2. 제안이유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써 공직자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별지 서식에 의해 신고하도록 변경(안 제4조제2항)
- 나. 신고기한과 관련된 조항 추가(안 제4조의2)
- 다. 위원회의 구성 등에 위원의 비밀 누설 금지 조항 추가(안 제13조제5항)
- 라.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변경(안 제16조제3항 및 별표)
- 마. 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조항 추가(안 제2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 2) 「형법」 제129조 ~ 133조
-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 4)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붙임 1)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22. 9. 29. ~ 2022. 10. 19.) 결과: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결과: 해당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4)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 수용¹⁾
 - 제13조제1항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고려 사항을 반영함

5.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

-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보호를 강화하여 부조리 신고 제도를 내실화함으로써 우리 구 부패취약분야를 개선하고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1) 서울성별영향평가센터 성별영향평가 결과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보상금지급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별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개선의견을 따라 조례안 제13조 제1항에 해당내용을 추가하여 수정함

나. 주요 내용

- 안 제4조 제2항에서는 부조리 신고 별지 서식(붙임 2)을 추가하여 부조리 신고자의 편의성을 도모하였고
- 안 제4조의2에서는 부조리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법」²⁾상 징계시효를 준용하여 행위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과 관련된 부조리 신고는 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형법」³⁾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⁴⁾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정한 공소시효에 맞게 부조리 행위의 신고기한 조항을 신설함
- 안 제13조 제5항에서는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함
- 안 제16조 제3항 및 별표(붙임 3~4 참고)에서는 부조리 신고 보상금 상한액⁵⁾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 등으로 확대하여 신고 포상금제의 실효성을 제고함
- 안 제21조에서는 피신고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 4) 붙임5 관계법령 참고

5) 서울특별시 자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상한액 현황

(단위:천원)

기준	1,000	2,000	3,000	5,000	10,000	규정없음
자치구(수)	1	2	9	5 (강서구)	4	4

-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19조에서는 ‘부조리신고’를 ‘부조리 신고’, ‘부조리신고자’를 ‘부조리 신고자’ 등으로 규정에 맞게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다. 종합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보호를 강화하여 부조리 신고 제도를 내실화함으로써 우리 구 부패취약 분야를 개선하고 종합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 「지방공무원법」 상 징계시효 등에 따라 신고기한 조항 신설 및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상한액 확대 등 부조리 신고 제도의 실효성과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 규정을 개선하고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애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1. 비용의 발생 요인: 부조리 신고 보상금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 (민선8기 공약사항)
2. 비용추계의 전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건수 연 2건 발생 예상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계
세출(구비)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4.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비고
(합계)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부조리신고 보상금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 산출 근거

- 1) 부조리신고 보상금 : 연 2회 지급 예상

5.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계
자체수입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6. 작성자: 감사담당관 김완주(☎ 2600-6009)

붙임2**공직자 부조리 신고서**

공직자 부 조 리 신고 서(제4조 관련)

신 고 자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연 락 처	
	근 무 처		주 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전화번호)		직 위 (직 급)	
신 고 내 용				
증빙자료				
비 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붙임3

[별 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기준 (개정전)

1. 지급기준별 보상금액

구분	신고 유형	지급 기준	보상금액
1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금품 향응 수수액	
		• 1억원 이상	- 500만원 이내
		•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400만원 이내
		• 5백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 300만원 이내
		• 1백만원 이상 ~ 5백만원 미만	- 200만원 이내
		• 1백만원 미만	- 100만원 이내
2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구제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추징·환수액	
		• 40억원 이상	- 500만원 이내
		• 2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 최고 400만원 이내 (3백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05%)
		• 5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 최고 300만원 이내 (2백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067%)
		•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최고 200만원 이내 (1백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25%)
		• 1억원 미만	- 100만원 이내
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알선·청탁 행위의 대가로 제공된 금품액 등	- 알선·청탁 행위의 대가로 제공된 금품액 등의 10배 이내
4	그 밖에 구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를 신고하여 부조리를 척결하거나 구정의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경우	- 500만원 이내
		- 다수의 공무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 사안을 신고하여 구정의 청렴도 향상의 계기가 된 경우	- 300만원 이내
		- 그 밖의 부조리 사안을 신고하여 구정발전 또는 구정의 청렴도 향상에 공적이 인정된 경우	- 100만원 이내

2. 신고금액 결정기준 등

- 금품·향응 수수액 및 알선·청탁 행위의 대가로 제공된 금품액 등은 감사·수사 등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 추징·환수액은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 **지급 상한액은 500만원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

붙임4

[별 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기준 (개정안)

1. 지급기준별 보상금액

구분	신고 유형	지급 기준	보상금액
1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u>금품·향응 수수액</u>	- <u>금품·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u>
2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u>추징·환수액</u>	- <u>추징·환수액의 20%</u>
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알선·청탁 행위의 대가로 제공된 금품액 등	- 알선·청탁 행위의 대가로 제공된 금품액 등의 10배 이내
4	그 밖에 구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를 신고하여 부조리를 척결하거나 구정의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경우	- 500만원 이내
		- 다수의 공무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 사안을 신고하여 구정의 청렴도 향상의 계기가 된 경우	- 300만원 이내
		- 그 밖의 부조리 사안을 신고하여 구정발전 또는 구정의 청렴도 향상에 공적이 인정된 경우	- 100만원 이내

2. 신고금액 결정기준 등

- 금품·향응 수수액 및 알선·청탁 행위의 대가로 제공된 금품액 등은 감사·수사 등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 추징·환수액은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 **지급 상한액은 1,000만원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1.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징계 등 사유가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3. 그 밖의 징계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3조(뇌물공여 등) ①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은 제3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併科)한다.